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제처 내 공직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법제처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7. 2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3. ~ 7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46”을 “24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45”를 “246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 “17”을 “18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246”을 “24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45”를 “246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 “17”을 “1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246	247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245	246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주사	17	18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2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246	247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245	246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주사	17	18	+1
•	•	•	
•	•	•	